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 
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7 월 3 일

여 수 시 장

2024.7.3



여수시 조례 제2098호

붙임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

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여수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.

제3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, 길을 잊거나 버려진 어린이(미아·기아)·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
3.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
4. 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5. 시장 또는 읍·면·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4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

## 따른 경비

2.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
3. 방범초소 전기료
4.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, 지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3조의 자율 방범활동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중단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  2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  3. 제7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  4.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제6조(정산)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류와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매월 시작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,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

문서번호	접수일자	20 . . .
시행일자	접수번호	총무과
수	처리과	총무과
신 여수시장(총무과)	담당자	

제 목 20 년 ( )월 ( )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 제출

### [ ]월 방범 실적 보고

방범활동실적		차량순찰 내역		
방범활동일수 일	방범활동인원 명	계기판 주행거리		총 주행거리 (⑥-⑤) km
		시작 <sup>⑤</sup>	종료 <sup>⑥</sup> km	

⑤ 매월 첫 번째 차량순찰 시작 시 계기판 주행거리

⑥ 매월 마지막 차량순찰 종료 후 계기판 주행거리

### [ ] 자율방범대장

직인

우 소재지 여수시

총무(사무국장) 성명 : 연락처 :

방범대장 성명 : 연락처 :

(별지 제2호 서식)

[ ]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일지

20 년 월 일 요일

조장	방범대장	결재
----	------	----

1. 활동내역

연번	성명 일계	서명 (정자로 기재바람)	방범활동시간(24시간제로 기재)		
			명	~	시간 분
1				~	시간 분
2				~	시간 분
3				~	시간 분
4				~	시간 분
5				~	시간 분
6				~	시간 분
7				~	시간 분
8				~	시간 분
9				~	시간 분
10				~	시간 분

2. 주요 순찰내용 (간략하게 기재)

순찰시간 (24시간제)	순찰장소 (순찰동선)	활동내용 및 조치사항	차량순찰부 여부 <input type="radio"/> ○,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×
~			
~			
~			

3. 차량순찰 내역 (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)

차량번호	운전자	계기판 주행거리		총 주행거리 (③-②)
		시작 <sup>①</sup>	종료 <sup>②</sup>	
		km	km	km

20 . . .

확인관 : \_\_\_\_\_ 파출소장 (인)

(별지 제3호 서식)

[ ]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사진대장

일시:	장소:	일시:	장소:
일시:	장소:	일시:	장소:

(별지 제4호 서식)

[ ] 월 야식비 지급대장 및  
봉사활동실적 인정 신청자 명단

방범대장	결
	재

연번	성 명	활동일수 (정자로 기재바람)	봉사활동실적 신청	
			생년월일 (신규신청의 경우)	서 명
1		일		
2		일		
3		일		
4		일		
5		일		
6		일		
7		일		
8		일		
9		일		
10		일		
11		일		
12		일		
13		일		
14		일		
15		일		
16		일		
17		일		
18		일		
19		일		
20		일		
월 계		일		

※ 담당자 확인란(자율방범대에서는 기재하지 마세요)

평균 방범활동시간 시간	월 방범활동일수 일	적용일수 일	야식비 지급액 천원
확인자	총무과 행정 급		(서명 또는 인)